< 기장우체국 공고 제2025-1호 >

취미우표 통신판매 예납금 국고귀속 안내

기장우체국에서는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취미우표 통신판매 예납금에 대하여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(국고에의 귀속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귀속 예정임을 공고합니다.

- 공 고 사 항 -

1. 국고귀속일: 2025. 2. 28.(금)
2. 국고귀속대상: 155건 106,260원
   * 국고귀속 범위: 보관의무 기간이 경과한 취미우표 통신판매 예납금 (환급청구가 없이 5년이 경과한 예납금)
3. 환급기간: 2025. 2. 6.(목)~2025. 2. 21.(금)
4. 환급장소: 기장우체국 영업과
5. 환급청구 시 구비서류
   가. 취미우표 통신판매 예납금 환급신청서 1부
   나. 통신판매 회원 명의 통장사본 1부
   다. 실명확인증표 1부
   라. 회원 본인이 아닌 경우 아래 서류 추가
      1) 위임장(계약자 인감 날인, 오시는 분 신분증) 1부
      2) 인감증명서 1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우체국 영업과(051-724-0014)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2025. 2. 5.

기 장 우 체 국 장

취미우표 통신판매 예납금 환급신청서

○ 회원번호 :

○ 성　　명 :

○ 생년월일 :

○ 연 락 처 :

○ 계좌번호 :

상기 본인은 취미우표 통신판매 예납금의 환급을 요청하오니
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 년　　월　　일

가입자 :　　(서명)

기장우체국장 귀하

기장우체국 취미우표 담당 (fax 051-721-2500 / ☎ 051-724-0014)
원본은 등기발송(주소: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로1, 기장우체국 취미우표담당)